

2026학년도 2학기 생활관(광주) 입주생 선발사정원칙

□ '26. 2학기 생활관(광주) 입주생 선발 순위

- ① 우선선발대상자로 신청 기간 내 신청자(해당서류 첨부 필수)
- ② 1학기 입주자로 2학기 신청 시 1학기와 같은 동 및 같은 유형 신청자

예) 유형1. 1학기 7동(APT형 3인실) 입주자 → 2학기 7동(3인실) 신청

유형2. 1학기 8동(APT형 3인실) 입주자 → 2학기 8동(3인실) 신청

유형3. 1학기 8동(APT형 6인실) 입주자 → 2학기 8동(6인실) 신청

유형4. 1학기 9동(APT형 3인실) 입주자 → 2학기 9동(3인실) 신청

유형5. 1학기 9동(APT형 6인실) 입주자 → 2학기 9동 신청

유형6. 1학기 9동(원룸형 2인실) 입주자 → 2학기 9동 신청

유형7. 1학기 청아관(원룸형 1인실) 입주자 → 2학기 청아관(1인실) 신청

유형8. 1학기 청아관(원룸형 2인실) 입주자 → 2학기 청아관(2인실) 신청

☞ 9동은 9A~D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동(APT형 6인실)과 9동(원룸형 2인실)은 같은 유형임

- ③ 1학기 입주자로 2학기 신청자(동 및 유형 상관없음)

- ④ 신규 신청자

- ⑤ 기타(휴학생)

※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선발 기준 및 세부 순위에 의해 선발함

1. 선발사정원칙

- 성적은 선발시기(2026. 7. 24.)를 기준으로 성적증명서에 명시된 최종(직전) 정규학기 성적(계절학기 불포함)을 적용

※ 기타 사정으로 성적산출이 안 될 경우에도 2026. 7. 24.(금) 현재 성적증명서에 등재된 성적을 기준으로 함.

(단, 직전학기 국내·외 타 대학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학생으로 성적 인정을 받고 싶은 학생은 반드시 2026. 7. 24.(금)까지 성적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됨)

- 광주시 외 거주자 인정 기준

- 부모님 두 분 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광주시외 일 경우
-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(부모님 명의) 상 기재되어 있는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가 광주시외 일 경우

순위	구분	선발 기준 및 순위	비고
1	우선 선발 대상자	■ 우선선발 대상(①~⑨ 순으로 우선순위 적용) ① 등록장애학생, 보호종료아동(보호종료아동은 1학년 1학기에 해당) ②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(학사경고자 제외) ③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, 차상위계층 가정(학사경고자 제외) ④ 대학원생 ⑤ 외국인학생(한국어연수생, 재외국민 포함-1학년 1학기만 해당) ⑥ 교류학생 ⑦ 직전학기 상점 10점 이상인 자 ⑧ 다자녀 가정(4명 이상의 자녀, 학사경고자 제외) ⑨ 대학평가를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■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 기준 위 ①~⑨의 순위에 따라 선발하되,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는 학부재학생 선발 기준에 의해 선발한다. ※ 단, ④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재학생보다 신입생을 우선하여 선발	• ②,③,⑧에 해당하는 경우, 광주 시외 거주자에 한함 • ①, ②, ③, ⑧에 해당하는 경우,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됨
2	기존 입주자	'26학년도 1학기 입주생(*중간퇴관자 제외)으로 2학기 입주신청자 ① 1학기 입주자로 2학기 신청 시 <u>1학기</u>와 같은 동 및 같은 유형 신청자 ② 1학기 입주자로 2학기 신청자(동 및 유형 상관 없음) 위 ①,②순으로 선발하되,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성적(4.5점), 직전 학기 생활관 상·벌점(1점 당 0.1 배점. 단, 배점 최대 ±0.5점으로 제한) 점수를 합산하여 학년 구분 없이 합계 점수순으로 선발 * 중간퇴관자: '26 6. 8.까지 퇴관한 사람	
3	신규 신청자	학부 재학생 성적(4.5점), 광주 시외 거주자(1.5점 가산), 직전 학기 생활관 상·벌점(1점 당 0.1 배점. 단, 배점 최대 ±0.5점으로 제한) 등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재학생(2026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)으로 학년 구분 없이 합계 점수순으로 선발	
	대학원생	성적(4.5점), 광주 시외 거주자(1.5점 가산), 직전 학기 생활관 상·벌점(1점 당 0.1 배점. 단, 배점 최대 ±0.5점으로 제한) 등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합계 점수순으로 선발 ※ 법전원의 경우 4.3만점을 4.5만점으로 환산하여 성적 적용	• 1순위: 신입생 • 2순위: 재학생
4	기타 (휴학생)	추가 선발자까지 확정 된 후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생 선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발	

2. 입주자격 상실

- 선발되어 생활관비를 납부하였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선발(입주)취소 또는 퇴관 처리됨

○ 선발(입주) 취소 또는 퇴관 대상 안내

- 과거 생활관 입주 중 강제퇴관 조치를 받은 자
- 건강검진 기간 내 건강검진 미검진자 또는 전염성 질환 보유자
- 대리입주, 무단 방 변경 등 규정을 위반한 자
- 금회 선발 후 별점이 추가되어 2026. 8. 27. 기준 별점 7점 이상인 자
※ 단, 2026학년도 1학기 생활관에서 별점 7점 이상을 받은 입주생은 2026학년도 2학기에 입주 불가
(별점 적용 기간: 2026. 2. 28. ~ 2026. 8. 27.)
- 2026. 9. 1.(화) 학적 조회 시 졸업생, 제적생으로 확인된 경우
- 2026. 9. 1.(화) 학적 조회 시 휴학생 또는 졸업유보자인 경우(단, 여석이 있을 경우 예외 적용 가능)
- 그 외, 생활관장의 판단에 따라 생활관 입주취소 또는 퇴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서류 첨부(업로드) 안내

○ 서류 첨부(업로드) 필요 여부

대상	학생구분	서류 첨부(업로드) 필요 여부		비고
		광주시외 거주자	광주시내 거주자	
기존입주자 (1학기입주자)	전체	X	X	우선선발대상자는 서류 제출
신규 신청자	학부생(전체)	O	X	해당서류 확인 후 첨부

○ 광주 시외 거주자 첨부(업로드) 서류

구분		해당 서류
필수서류 (미첨부시 광주시내 거주자로 인정)		부모님 거주확인용 증빙서류 (하단 “부모님 거주유형 확인용 해당서류 안내” 표 확인)
추가 서류 (해당자만 제출)	대학원신입생	학부성적증명서(전체 학년)
	등록 장애학생	장애인증명서
	보호종료아동	보호종료아동 확인서, 복지시설 재원 증명서, 복지시설 입·퇴소 확인서 중 택 1
	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	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(보훈처 발행본) ※ 직계자녀까지 인정
	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	차상위계층 가정	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, 자활근로자 확인서, 이동전화 서비스감면대상자 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(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, 부모명의 발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) 중 택 1
	다자녀 가정 (4명 이상의 자녀)	가족관계 증명서(일반 또는 상제) ※ 주민등록표(등본)상 4자녀 이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
※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,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, 차상위계층 가정, 다자녀 가정 학생 중 광 주시 내 거주자인 경우는 우선선발대상자로 인정 안 됨.(단, 가산점 1.5점 추가)		

○ 유의사항

- 서류 미첨부, 서류 미비, 입주신청 기한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
입주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, 생활관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.

- 첨부서류의 업로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, 반드시 입주신청 기간 내에 업로드 및 수정 완료해야 함.
- 모든 첨부서류는 **2026. 7. 1.(수) 이후 발급된 서류만** 인정되며, 기한 내 서류 미첨부 또는 미보완 시 해당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.
(일괄 광주시내 거주자로 처리, 우선선발 대상자 제외,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학점 0점 처리 등)
-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뒤 7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(삭제 처리) 첨부하여야 하며, 미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류 미비 처리될 수 있음.
- 첨부서류는 스캔본(jpg, pdf 파일)만 가능함.(서류 전체가 보여야 하며,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)
- 미리보기 화면 또는 임시 파일은 인정하지 않음.

○ 서류 첨부 안내(아래 사항 확인 후 서류 발급 받기)

- **2026. 7. 1.(수) 이후 발행된** 서류
- **세대주와의 관계, 성명 및 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 앞자리) 표시된** 서류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또는 7자리 가리기(지우기) 처리된 서류
- **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된** 서류(미리보기 서류는 불가)

■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

발급확인번호 :

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
없음을 증명합니다.

전화: - -
 담당자: (생년월일:)
 신청인: - -
 용도 및 목적: 2021년 7월 6일

주 민 등 록 표

(등 본)

경상북도 울릉군수 직인

세대주 성명(한자)	이대한	세 대 주 소 사유 및 일자	발 생 일 / 신 고 일	번 동 사 유
현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안용북길 815				
번호	세대주와의 관 계	성 명(한자) 주민등록번호	발 생 일 / 신 고 일 등 록 상 태	번 동 사 유
1	본인	이대한 650101-1xxxxxx	-	-
2	배우자	김겨례 700101-2xxxxxx	-	-
3	자녀	이독도 950101-1xxxxxx	-	-
4	자녀	이민국 000101-3xxxxxx	-	-

○ 부모님 거주 확인용 해당 서류 안내

혼인 여부	해당 사항	해당 서류
미혼	부모 두 분 모두 생존이고, 광주시외 거주자인 경우	<u>주민등록표등본</u> 단, 등본상 본인과 부모가 따로 기재된 경우에는 <u>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 추가</u>
미혼	부모 두 분 모두 생존이고, 광주시외 거주자인 경우이지만, 등본상 부모 주소지가 다른 경우	<u>주민등록표등본(부), 주민등록표등본(모),</u> <u>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</u>
미혼	부모 중 한 분이 관계단절(이혼, 실종 등)인 경우로 광주시외 거주자인 경우	<u>주민등록표등본(부 또는 모),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,</u> <u>관계단절인 분의 주민등록표초본,</u>
미혼	부모가 이혼하고 친권자가 광주시 외 거주자인 경우	<u>주민등록표등본(친권자), 가족관계증명서(친권자)</u>
미혼	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이면 서 광주시외 거주자인 경우	<u>주민등록표등본(부 또는 모),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</u>
미혼	부모 두 분 모두 사망한 경우	<u>주민등록표등본(본인),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</u>
미혼	부모 중 한 분이라도 광주시내 거주자인 경우	없음
기혼	무관	<u>주민등록표등본(본인)</u> 단, 배우자와 따로 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추가
외국인 재학생		없음
외국인 신입생(최초입국자만 해당)		홍역MMR 예방접종 증빙서류

※ 기타 문의사항은 생활관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 '커뮤니티-묻고답하기 게시판'에 문의